

독일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범위와 관리대상 권리

I. 머리말

독일에서의 저작권 신탁관리는 한국과 달리 저작권법이 아닌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¹⁾(이하 ‘저작권관리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등과 관련한 감독관청은 특허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II. 저작권관리법 개관

저작권관리법은 1965년 9월 9일 제정되어 2007년 10월 26일 제2차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14번째 개정되었다.

이 법률은 전체 4개의 장에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장에는 사업의 허가(제1장), 관리단체의 권리와 의무(제2장), 관리단체에 대한 감독(제3장), 경과 및 종결규정(제4장)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1장과 제2장은 저작권관리단체의 권한에 내재하는 남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사업허가에는 사업의 허가 의무(제1조), 허가의 부여(제2조), 허가의 거부(제3조), 허가의 철회(제4조) 및 허가의 고시(제5조)가 규정되어 있다. 제2장의 관리단체의 권리와 의무에는 관리강제(제6조), 수입의 분배(제7조), 배려 및 지원제도(제8조), 결산 및 감사(제9조), 통지의무(제10조), 계약강제(제11조), 포괄계약(제12



1)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

조), 요율(제13조), 기기와 저장매체의 요율 및 투명성(제13조a), 주최자의 의무(제13조b), 본안적격의 추정(제13조c), 중재소(제14조), 중재소의 합의안(제14조a), 합의안의 제한 및 제외(제14조b), 포괄계약에 대한 분쟁(제14조c), 케이블방송권에 관한 분쟁(제14조d), 절차의 중지(제14조e), 중재소의 절차(제15조), 법원에의 이의제기(제16조), 전속재판관할(제17조), 임의의 중재(조정)(제17조a)가 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3장의 관리단체에 대한 감독에는 감독기관(제18조), 감독의 내용(제19조), 보고의무(제20조)가 규정되어 있다.

Ⅲ. 저작권 관리사업의 허가

1. 허가의무

저작권관리법은 제1조 제1항에서 저작권관리단체의 경우 사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저작자 또는 인접권자를 위한 용익권, 동의권 또는 보상청구권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들 권리나 청구권을 관리하는 자는 그 관리가 자신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부를 불문

하고 이를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허가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저작권관리단체의 경우 그들의 업무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로부터 발생할 남용의 위험을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²⁾ 즉 제1조의 허가의무는 동법 제18조 이하의 국가의 감독권과 결합하여 저작권관리단체의 독점권을 규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가의무에는 예외가 있다. 권리나 청구권이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허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항). 즉 관리는 영업상,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또한 제1항이 요구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하는 자는 자기에게 위탁된 권리 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저작권법 제109조³⁾에서 부여한 고소권도 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제3항).

2. 허가의 부여

허가는 관리단체의 감독기관인 독일 특허청에서 부여한다(동법 제18조 제1항). 이 경우 연방카르텔청(공정거래청)(동법 제18조 제3항)과 협의하여 부여한다. 연방카르텔청과의 협의는



2) Schulze, Dreier/Schulze, Urheberrechtsgesetz, 3. Auflage 2008, Rn.1.

3) 저작권법 제109조(고소), 제106조 내지 제108조 및 제108조b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를 해야 할 특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직권에 의한 개입이 허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유효요건이다(제18조 제3항).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은 이를 연방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연방법무부장관은 연방경제장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이 지시가 특허청과 카르텔청과의 합의를 대신하게 된다(동법 제18조 제3항). 카르텔청과 협의하는 경우에도 카르텔청은 카르텔 관련 업무만 검토하고, 저작권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이 관장한다.

제2항에서는 허가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첨부될 서류들과 정보들은 제3항의 허가의 거부 사유와 관련이 있다.

허가의 신청은 문서로 하고, 허가신청에 의해서 감독관청(제18조 제1항)은 허가를 부여한다. 신청시에는 ① 관리단체의 정관,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대표하는 권한이 주어진 자의 성명, 주소 및 국적에 관한 사항, ③ 관리단체에 용익권, 동의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관리를 위탁한 자의 수, 그리고 관리단체에 관리가 의뢰된 권리 및 청구권의 수와 경제적 중요성에 관한 설명 등의 자료가 첨부되고, 이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동법 제2조). 이러한 신청에는 신청권자가 제1조 제1항에 의해서 허가 의무가 있는 활동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의 요건들, 예를 들어

유한회사법, 단체법(민법 제22조) 및 영업법 제14조⁴⁾에 의한 요건들은 허가 부여 절차의 대상은 아니다.

특히 신청자의 경제적 중요성(제2조 2문 3호)과 관련하여 신청자는 다양한 저작자를 위해서 충분히 활동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충분한 경제적 자산을 가지고 있음을 신청시에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초기자본이 있어야 한다.⁵⁾ 허가에 있어서 관리능력, 관리의 대상, 집중관리, 신탁의 지위 등이 주로 검토된다.

3. 허가의 거부(제3조)

허가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로는 ① 관리단체의 정관이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일을 행함에 필요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③ 관리단체의 경제적 기반으로는 그 단체에 의뢰된 권리 및 청구권의 효과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즉 정관의 규정이 저작권관리법의 구체적 내용들을 충족해야 하고, 관리단체의 대표는 특히 재산범죄의 전과가 없어야 하며, 저작자나 인접권자의 권리보호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제



- 4) 독일의 경우 영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영업법 제14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 5) Himmelmännin, Kreile/Becker/Riesenhuber(Hrsg.), Recht und Praxis der GEMA: Handbuch und Kommentar, Kap. 18 Rdnr. 35 ff.

적 기반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허가의 거부는 이유를 붙여 관리단체에 송달하여야 한다. 허가의 거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40조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기간은 송달 후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70조, 제57조).

4. 허가의 철회(제4조)

허가가 철회되는 경우로는 첫째 허가 부여시 제3조 제1항에 정한 거부사유의 하나가 감독관청에 알려지지 아니하였거나 나중에 발생되어 감독관청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그 흠결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 둘째 관리단체가 본 법이 부과한 의무를 감독관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허가의 철회는 이유를 붙여 관리단체에 송달하여야 하고, 철회의 효력발생시점이 이후의 시점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5. 고시(제5조)

허가의 부여 및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철회는 연방관보에 고시되어야 한다. 허가의 부여와 이의 철회는 특별한 공익을 가지기 때문에 감독관청이 이를 연방관보에 게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허가의 거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IV.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범위

1. 관련 규정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제4항은 법인 또는 인적 공동체(eine Personengemeinschaft)가 저작권 관리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자연인에게도 동법상의 관리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관리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범위

가. 법인 또는 인적단체

(1) 영리법인 및 유한회사

제4항에서는 관리단체를 우선 제1항에 언급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인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의 법적 형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관리단체는 주로 영리법인(사단)이나 유한회사(GmbH)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요건들은 각각 관련 규정들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영리법인이나 유한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유한회사법(GmbH)의 규정, 민법 제22조의 영리법인(Wirtschaftlicher Verein) 규정 그리고 연방영업법 제14조의 신고 의무 등의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요건의 준수는 저작권 관리단체로서 허가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2) 저작권 관리단체

2010년 8월 11일 현재 저작권관리법 제1조에 의하여 특허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저작권관리단체는 모두 12개이다.⁶⁾ 그 단체는 아래와 같다.

- GEMA⁷⁾ : 1915년 창설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작권 관리단체로서 주로 음악의 연주권과 복제권을 독점적으로 관리
- GVL⁸⁾: 공연예술가, 음반제작자 및 뮤직비디오 제작자를 위한 저작권접권 관리
- VG Wort⁹⁾ : 어문저작물 관리
- VG Bild-Kunst¹⁰⁾ : 미술 및 사진저작물 관리
- VFF¹¹⁾ :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자 관리
- VG Musikedition¹²⁾ : 인접권 관리
- GÜFA¹³⁾ : 1976년 영화부문에서 처음으로 허가받은 관리단체로서 주로 에로영화 관리

- VGF¹⁴⁾ : 주로 독일 및 외국의 아동영화 및 오락영화 관리단체

- GWFF¹⁵⁾: 영화 및 TV, 복제 및 2차적 이용 관리
- AGICOA GmbH¹⁶⁾ : 저작권 관리
- VG Media¹⁷⁾ : 미디어기업
- VG TWF¹⁸⁾ : 광고영화

(3) 징수단체

관리단체 외에 관리단체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설립한 징수단체들이 존재한다. 이 단체들은 독자적인 신탁의 성격이 없으므로 기존에 허가되어 있는 징수기관에 해당한다.¹⁹⁾

- Die ZPÜ(GEMA, GVL und VG WORT) : 사적복제청구권 행사(저작권법 제54조 제1항)
- Die ZBT(GEMA, VG Bild-Kunst und VG WORT) : 도서관 대여에 대한 보상청구권



6) <http://www.dpma.de/docs/dpma/aufgaben/listederverwertungsgesellschaften2.pdf>.
 7) Gesellschaft für musikalische Aufführungs- und mechanische Vervielfältigungsrechte (<http://www.gema.de>).
 8) Gesellschaft zur Verwertung von Leistungsschutzrechten(<https://www.gvl.de/index.htm>).
 9) Verwertungsgesellschaft Wort(<http://www.vgwort.de/>).
 10) Verwertungsgesellschaft Bild-Kunst(<http://www.bildkunst.de/>).
 11) Verwertungsgesellschaft der Film- und Fernsehproduzenten(<http://www.vffvg.de>).
 12) Verwertungsgesellschaft Musikedition(<http://www.vg-musikedition.de/>).
 13) GÜFA Gesellschaft zur Übernahme und Wahrnehmung von Filmaufführungsrechten mbH(<http://www.guefa.de/>).
 14) Verwertungsgesellschaft für Nutzungsrechte an Filmwerken mbH(<http://www.vgf.de/>).
 15) Gesellschaft zur Wahrnehmung von Film- und Fernsehrechten mbH(<http://www.gwff.de/>).
 16) Urheberrechtsschutz Gesellschaft mbH (<http://www.agicoa.org>).
 17) VG Media zur Verwertung der Urheber- und Leistungsschutzrechte von Medienunternehmen mbH(<http://www.vgmedia.de/>)
 18) Verwertungsgesellschaft Treuhandgesellschaft Werbefilm GmbH(<http://www.twf-gmbh.de/>).
 19) Kreile/Becker/Riesenhuber/Kreile Kap. 16.

저작권법 제27조 제2항)

- Die ZFS(VG Bild-Kunst, VG Musikedition und VG WORT) 사진복사 보상청구권(저작권법 제54조a 제2항)
- Die ZVV(GEMA, GVL, GÜFA, GWFF, VGF, VG WORT und VG Bild-Kunst) : 임대차 관련 보상청구권(저작권법 제27조 제1항)
- Die ZWF(GWFF, VG Bild-Kunst und VGF) : 공연전시 관련(저작권법 제21조, 제22조)
- Die ARGE DRAMA(GEMA und VG WORT) : 유선방송권
- Die ARGE KABEL(GVL, VG Bild-Kunst und VG WORT) : 유선방송권 관련 보상청구권(저작권법 제20조b 제2항)

(4) 관리단체의 수익금

허가받은 12개 저작권관리단체의 2008년도 총 수익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0억 2천 유로 이상이다.²⁰⁾ 이 수치는 용익권, 보상청구권, 증권 및 이자 수입, 기탁 운영수익을 합한 것이다.

* 2008년 독일 저작권관리단체의 전체 수익금²¹⁾

관리단체	수익금
GEMA	823,007 Mio. €
GVL	155,638 Mio. €

관리단체	수익금
VG Wort	124,702 Mio. €
VG Musikedition	3,071 Mio. €
VG Bild-Kunst	61,372 Mio. €
GÜFA	8,277 Mio. €
VFF	13,392 Mio. €
VGF	10,600 Mio. €
GWFF	36,469 Mio. €
AGICOA GmbH	4,932 Mio. €
VG Media	31,715 Mio. €
VG TW F	1 Mio. €
합계	1,273,176 Mio. €

나. 자연인(개인)

저작권관리법은 개인도 제1항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고, 영업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2문). 이 경우 개인은 충분한 경제적 자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자연인에게 관리단체의 허가가 부여된 적은 없다. 다만 지금까지 2명의 자연인이 이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 중 하나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활동이 문제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다.²²⁾



20) 2011년 1월 현재 원-유로 환율은 약 1500:1.

21) 출처 : 독일 특허청 2009년도 보고서(<http://www.dpma.de>).

22) Gerlach, Wandtke/Bullinger, Urheberrecht 3. Auflage 2009, Rn.8.

다. 외국인

저작권관리법은 내·외국인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제2장 2문 2호 참조).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의 구성원은 차별금지에 의하여(EGV 제12조), 독일에서 관리단체의 영업활동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여 관리단체로서 활동하거나, 독일에서 저작권에 관해서 존재하는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거부될 수 없다.²³⁾ 물론 외국의 관리단체도 만일 그가 장기간 독일에서 활동할 의도인 경우에는²⁴⁾ 허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V. 관리단체에 의해 관리되는 권리

저작권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권리는 저작권법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저작자 또는 인접권자를 위한 용익권, 동의권 또는 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이들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청구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겠다.

1. 전통적으로 단체에 의해서만 관리될 수 있는 권리

관리단체는 우선 대규모 이용으로부터 발생하여 전통적으로 단체에 의해서만 관리될 수 있는 권리와 청구권을 관리한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녹화물 혹은 녹음물을 통한 재현권(제21조),²⁵⁾ 방송 및 공중전달에 의한 재현권(제22조),²⁶⁾ 실연자의 수록, 복제 및 배포권(제77조),²⁷⁾ 그리고 분배청구권(제86조)²⁸⁾ 등이 있다.

2. 저작권법상 관리단체에게만 관리가 허용되어 있는 권리

저작권법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관리단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



23) Häußler, FS Kreile1 994, S. 281, 285 f.; Dördelmann GRUR 1999, 890, 893.

24) OLG Köln ZUM 2007, 927 - Ausländische Wahrnehmungsgesellschaft; K. Meyer S. 42 ff. und 56 f.; Schrickler/Reinbothe §1 Rdnr. 1.

25) 저작권법 제21조(녹화물 혹은 녹음물을 통한 재현권) 녹화물 혹은 녹음물을 통한 재현권이란 저작물이 구술 혹은 공연된 것을 녹화물 혹은 녹음물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제19조 제3항이 이에 준용된다.

26) 저작권법 제22조(방송 및 공중전달에 의한 재현권) 방송 및 공중전달에 의한 재현권이란, 저작물의 방송물 및 공개전달에 근거한 저작물의 재현물을 화면, 확성기 혹은 이에 유사한 기술장치를 통하여 공개 감지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제19조 제3항이 준용된다.

27) 저작권법 제77조(수록, 복제 및 배포) ①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녹화물 또는 녹음물에 수록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②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이 수록된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복제 및 배포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7조가 준용된다.

28) 저작권법 제86조(분배청구권) 실연자의 실연을 수록한, 발행되었거나 적법하게 공중전달된 음반이 실연을 공개재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음반제작자는 실연자에 대하여 실연자가 제76조 제2항 및 제77조에 의하여 받는 보상에 대해 상당한 분배를 구하는 청구권을 가진다.

어 있어야 한다. 사전위임 규정은 저작권법 제63조a에 의해서 저작권법상의 제한과 관련된 모든 법률상의 보상청구권 및 실연자들의 보상청구권(저작권법 제78조 제3항)에 적용된다.

법적 보상청구권은 포기될 수 없고 이를 사전에 관리단체에게만 위임되도록 규정해 둔 입법자의 의도는, 저작자 및 실연자의 권리가 적절한

반대급부 없이 양도되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권리로는 유선재전송권(제20조b 제1항 및 제2항),²⁹⁾ 추급권(제26조),³⁰⁾ 임대차 및 사용대차를 위한 보상(제27조),³¹⁾ 신문기사 및 방송해설(제49조),³²⁾ 수업 및 연구를 위한 공중전달(제52조a),³³⁾ 주문에 의한 복제 발송(제53조a



- 29) 저작권법 제20조b(유선재전송) ① 동시에 변경되지 않으며 완전하게(아무런 변경 없이 동시에 완전히) 재전송되는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방송된 저작물을 케이블시스템이나 마이크로파시스템을 통하여 재송신(유선재전송)하는 권리는 오직 관리단체를 통하여만 행사될 수 있다. 이 점은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에 관하여 행사하는 권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저작자가 유선재전송권을 방송사업자 혹은 음반제작자 또는 영상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면, 유선사업자는 동시에 저작자에게 유선재전송을 위한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청구권은 포기될 수 없다. 보상청구권은 관리단체에게만 사전에 양도될 수 있으며 당해 단체를 통하여만 행사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저작자에게 그로 인하여 각 유선재전송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이 부여되는 한도에서 방송사업자의 단체협약 및 경영합의에 반하지 않는다.
- 30) 저작권법 제26조(추급권) ① ~ ③ 생략. ④ 저작자는 미술상 혹은 경매인에게 그들의 관여 아래 정보 요구 이전 연도에 자신의 저작물 원본 중 어떤 원본이 재매매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저작자의 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저작자는 미술상 혹은 경매인에게 매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위 미술상 혹은 경매인이 저작자에게 그의 지분을 지급하였다면, 위 미술상 혹은 경매인은 매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정보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상의 청구권은 관리단체를 통하여만 행사될 수 있다.
- 31) 저작권법 제27조(임대차 및 사용대차를 위한 보상) ① 저작자가 녹음물 혹은 녹화물상 대역권(제17조)을 음반제작자 혹은 영상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면, 임차인은 동시에 저작자에게 당해 임대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위 보상청구권은 포기될 수 없다. 동 청구권은 관리단체에만 사전에 양도될 수 있다. ②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배포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원본 혹은 복제본의 사용대차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당해 원본이나 복제본이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대본소 혹은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나 여타 원본이나 복제본의 수집소)을 통하여 대출되는 경우이다. 위 제1문에 따른 사용대차는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나, 직·간접적으로 영리의 목적에 이바지하지 않는 사용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다. 제17조 제3항이 준용된다. ③ 제1, 2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 32) 저작권법 제49조(신문기사 및 방송해설) ① 개개의 방송해설과 신문 및 기타 단지 일상의 관심사를 위한 정보잡지의 개개 기사를 다른 신문 및 같은 종류의 정보잡지에서 복제 및 배포하며, 당해 해설 및 기사가 정치, 경제 혹은 종교에 관한 시사문제에 관한 것으로 권리 유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들을 공개 재현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와 같은 복제, 배포 또는 공개 재현에 관하여 저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된다. 다만, 개관하는 형태로 수개의 해설 또는 기사로부터 짧은 발췌물로 복제, 배포, 또는 공개 재현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이 청구권은 관리단체를 통하여만 행사될 수 있다.
- 33) 저작권법 제52조a(수업 및 연구를 위한 공중전달) ① 다음 각 호의 공중전달은 각각의 목적에 이바지하며,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도록 정당화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1. 특정 범주의 수업참가자들만을 위한 학교, 대학교, 비영리목적의 교육, 재교육 시설 및 직업교육시설에서 수업의 설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작은 부분, 사소한 범위의 저작물 및 신문 혹은 잡지로부터 개개 기고들의 공중전달, 2. 자신의 학술 연구를 위한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작은 부분, 사소한 범위의 저작물 및 신문 혹은 잡지로부터 개개 기고들이 공중전달. ② 학교에서 수업용으로 특정한 저작물의 공중전달은 항상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영상저작물의 공중전달은 본 법의 적용범위 내의 영화관에서 통상적인 정규이용이 시작된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항상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제1항의 경우 공중전달에 필요한 복제도 허용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중전달을 위하여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 청구권은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2항), 관리단체의 통지의무 등(제54조h),³⁴⁾ 알려지지 아니한 이용의 형태에 대한 경과규정(제137조), 법정보상청구권(제63조a)³⁵⁾이 있다.

3. 개인적인 권리인 복제권 및 배포권

개인적으로 관리되고 부여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복제권(제16조 제1항) 및 배포권(제17조 제1항)이다. 복제권이란, 그 절차 및 수량에 관계없이,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저작물의 복제본을 제작하는 권리이다(저작권법 제16조 제1항).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본 혹은 복제본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거래토록 하는 권리이다(저작권법 제17조 제1항).

4. 침해의 배제 및 손해배상청구권(제97조)

저작권 또는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그 밖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침해의 배제를, 반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다. 부작위 청구는 위반행위가 처음으로 임박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그 행위를 한 자는 이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해자가 권리의 침해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고려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가 침해된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허락을 구했다라면, 정당한 보수로 지불했어야 했던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수 있다. 저작자, 학술적 출판물의 저자(제70조), 사진가(제72조) 및 실연자(제73조)는 재산적 손해가 아닌 손해를 이유로, 금전에 의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배상은 형평에 합치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제2항).

5. 정보청구권(제101조)

이 규정은 2008년 7월 7일자 지적재산권의 실행 개선을 위한 법률³⁶⁾에 의하여 기존의 제101조 a(제3자에 대한 청구권)를 개정하여 제101조를 새로 둔 것으로써,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의 RICHTLINIE 2004/48/EG 의 제8조를 국내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청구권은 피해자가 저작권법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원인과 침해의 경로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있다.



34) 여기에는 저작권법 제54조(녹화 및 녹음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경우의 보상의무), 제54조a(사진복사의 방법상 복제를 위한 보상의무), 제54조f 제3항의 신고의무, 제54조a의 정보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35) 저작권법 제63조a(법정 보상청구권) 본 절에 따른 법정 보상청구권은 사전에 포기될 수 없다. 법정 보상청구권은 관리단체에게만 사전에 양도될 수 있다.

36) Gesetz zur Verbesserung der Durchsetzung von Rechten des geistigen Eigentums v. 7. 7. 2008 (BGBl. I S. 1191).

가. 청구의 당사자

자신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그 밖의 권리가 상업적으로 위법하게 침해되고 있는 경우 피해자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복제본이나 그 밖의 제작물의 출처와 판매경로에 관한 정보를 그 가해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1항). 여기에 포섭되는 행위는 복제 및 유포 행위뿐 아니라 디지털 사용도 포함된다. 상업성의 여부는 권리침해의 수와 권리침해의 비중을 근거로 판단하며 순수한 사적인 이용은 배제된다.³⁷⁾

나. 제3자에 대한 청구

권리의 침해가 명백한 사례나 가해자나 침해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의 경우에는 전항과 상관없이 제3자에 대해서도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항). 이 경우 제삼자는 상업적으로 ①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본을 소지하거나, ② 권리를 침해하는 서비스제공을 요청하거나, ③ 권리를 침해하는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④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정보에 의해서 그러한 복제본, 그 밖의 제작물 또는 서비스제공의 제작, 생성 및 영업에 참여한 경우여야 한다. 특히 세 번째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제3자는 가해자에 대한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383조 내지 제385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정보요청을 법원에서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은 신청에 의해서 정보요청으로 진행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침해자에 대해서 계류 중인 소송을 연기할 수 있다. 정보요청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해자로부터 정보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제공되는 정보

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는 ① 복제본 및 그 밖의 제작물의 제작자, 공급자 및 그 밖의 이전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서비스제공의 이용자 및 구매자와 판매자의 성명과 주소, ② 제조, 공급, 보유, 주문된 복제본, 그 밖의 제조물의 수, 해당 복제본 및 그 밖의 제작물에 지출된 가격이다(제3항).

라. 비례성원칙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정보청구는 개별적인 사례에서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제4항). 즉 정보청구는 적절하고 필요하고 상당하여야 한다.



37) OLG München GRUR 2007, 419, 423.

마.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정보 제공시 보상 의무

정보제공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를 잘못 제공하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제5항).

바. 의무 없는 정보제공의 경우 책임제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정보제공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그에게 정보제공의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제6항). 즉,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책임을 진다.

사. 가처분에 의한 권리보호

권리침해가 명백한 경우 정보제공의무는 민사소송법 제935조 내지 제945조에 의한 가처분의 방식으로 명령될 수 있다(제7항). 권리침해의 명확성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침해가 명백하여 하자 있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 권리가 명확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³⁸⁾

아. 증거사용금지

정보청구로 인하여 인식한 정보내용은 정보 제공 이전에 행한 범죄로 인한 형사절차나 질서

위반법상의 절차에서 정보제공의무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해서 정보제공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제8항).

자.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비밀

정보가 정보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해서만 제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받기 위해서 피해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에 대해 법원의 사전 명령을 받아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집, 처리, 이용되는 정보를 말한다(전기통신법 제3조 제30호). 이 규정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가 권리침해와 관련한 정보를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의 명령을 규정해 둔 것은 통신접속시간 등 통신한 사실과 관련한 자료는 전기통신법 제88조와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서 통신의 비밀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9항 및 제2항을 통하여 통신비밀의 기본원칙(기본법 제10조)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항).

이 명령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의무자의 거주지, 소재지 또는 영업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부에서 결정한다. 절차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원의 명령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한다.



38) Möhring/Nicolini/Lütje § 101 a Rdnr. 13.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가 가능하고, 항고는 2주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9항).

6.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권리

부당하게 저작권을 이용한 경우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³⁹⁾과 인격권⁴⁰⁾도 이 권리로 파악되고 있다.

VI. 맺음말

독일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는 저작권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저작권관리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저작권 신탁관리는 법인이나 인적 단체 또는 자연인에게 허용되어 있으나 감독기관인 특허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저작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단체의 권한 독점과 이로 인한 남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박 희 영

(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39) BGH GRUR 1987, 128.

40) OLG Hamm NJW-RR 1987, 232.